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6호 2022. 5. 6(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22-1039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 남원시공고 제2022-1058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6
- 남원시공고 제2022-1085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공고 제1039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다. 문화원의 지원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 라. 사업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3. ~ 2022. 5. 2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nixie37@korea.kr), fax(063-620-6707)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63-620-6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다. 문화원의 지원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 라. 사업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2022. 5. 3. ~ 2022. 5. 23. (20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재정수반요인
 - ① 남원문화원 지원·육성 의무
 - ② 남원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관련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 ①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직원3명, 학예사1~3명)
 - 학예사 인건비는 공모사업비(2022년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기준액 반영
 ※ 공모지원액 : 34백만원(국비 22 / 시비12)
 - ② 문화원 공공체제, 일반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 반영
 - ③ 남원 문화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2. 비용추계의 결과

- 인건비 상승률(2%) 및 인력 확충(2026년까지 추가3명), 물가 상승률(1.5%) 등 고려
 - 공모사업확정(국가직접지원)으로 2023년까지 학예사 1명 인건비(국비, 시비) 지원 가능하나, 2024년부터 전액시비로 편성해야하며 2024~2025년 학예사 2명, 2026년 학예사 3명 필요 (※ 문화원의 학예기능 강화 필요에 따른 인건비 상향 불가피)
 - 학예기능 강화 시 전문적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필요
 - 연도별 비용 예상 추계표 (단위 : 연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36	22	22	192	248	22	22	204	297	0	22	275	313	0	22	291	369	0	22	347
운영비	147	22		125	150	22		128	188			188	191			191	232			232
사업비	89		22	67	98		22	76	109		22	87	122		22	100	137		22	115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주재원은 시비)
 - 운영 관련 : 시비보조금, 국가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직접지원
 - 사업비 관련 : 시비보조금, 도비보조 및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없음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보조 하은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4	44	22	22	22	154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세 출		236	248	297	313	369	1,463
국비		22	22				44
도비		22	22	22	22	22	110
시비		192	204	275	291	347	1,30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2	22	22	22	22	110
	보조금	22	22	22	22	22	11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영근 담 당 : 지방행정주사 정미옥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용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하은숙				
4. 근거법령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신설규제》</p> <p>○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p> <p>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p> <p>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p> <p>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문화원의 본래의 목적인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동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에 시설 이용 제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없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조례 제정으로 실현가능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별도의 행정비용 미발생)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부정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본래 목적성 훼손 방지
-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증진이 가능함.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시설의 이용조항과 관련하여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객관성과 명확성 확보 가능
- 타 시도 사례 : 과천시, 고양시 조례 등 사용허가 취소 조항 명시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22-1058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0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2005.02.14.) 운영하였음.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2022. 4.15.)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02. ~ 2022. 5. 2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원예산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umpkoj@korea.kr), fax(063-620-6745)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산업과 농산물유통담당(☎063-620-6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출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원 예 산 업 과 장

1. 폐지이유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2005.02.14.) 하였으나,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2022. 4.15.)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1085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안 제13조제4항)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1, 2, 3)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4. ~ 2022. 5. 2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년 5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kangjy1217@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안 제13조제4항)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1, 2,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2022. 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